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문화재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

2015. 4.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2
1. [방송통신위원회] 4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통보)	3
2. [방송통신위원회]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주의) ..	6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 2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작성을 완료함에 따라 위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015. 2. 26.부터 같은 해 3. 16.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시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분야 감사 결과는 이번 감사결과에 포함하여 시행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첫째,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둘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용의 타당성, 셋째,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3. 23.부터 같은 해 4. 3.까지 9일간 감사인력 10명(재무제표 점검을 위한 공인회계사 3명 별도)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 4. 2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별첨

감사원

통보

제 목 4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관청 방송통신위원회

관계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4급 이하 직원¹⁾을 대상으로 실·국내 직급별로 등급을 정하여 성과상여금²⁾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5. 1. 23. 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 중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 지급률은 기준금액의 172.5% 이상으로서 최하위 등급 지급률의 3배 이상이어야 하고, 최하위 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4년 2월 및 2015년 2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을 S등급은 20%, A등급은 50%, B등급은 29%, C등급은 1%³⁾로 정한 후 실·국내 직급별 인원수에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산정하고, S등급은 ‘지급 기준액’의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0%를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1) 2014년 4급 이하 직원 수에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여 지급 인원은 166명이 되고, 2015년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204명이 되며 4급과장은 제외됨

2) 2014년 565,987,290원, 2015년 692,693,830원임

3) 2015년 기획조정실 소속 5급 15명을 인원비율에 따라 산정할 경우 S등급 3명, A등급 8명, B등급 4명이 되고,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며,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그런데 위 관서에서 결정한 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은 직급별 인원수가 최소 42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표 1]과 같이 실·국내 직급별 인원수가 25명 이하인 위 관서의 경우 C등급이 발생할 수 없어⁴⁾ 사실상 B등급 이상의 3개 지급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표 1] 지급단위 실·국 및 직급별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현원	지급단위 실·국 수	실·국내 직급별 인원 범위			
			4급	5급	6급	7급 이하
2014년	166	4	0~4	16~21	10~25	1~13
2015년	204	5	1~4	7~20	8~17	2~1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실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C등급의 인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3개 등급으로 지급등급을 분류할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인 S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의 지급률을 3배 이상으로 하여야 했다.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례

-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정·현원 규모가 유사한 금융위원회 및 법제처의 경우 C등급의 인원비율을 5%로 정하여 각각 C등급을 받은 13명 및 7명의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결정한 문화재청은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180%,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60%로 하는 등 지급률을 3배 이상으로 운영 중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의 인원비율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한 채 2014년 3월 및 2015년 3월 4급 이하 직원들에게 S등급은 ‘지급 기준

4)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은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2014년 7명, 2015년 6명의 2개월 미만 근무자가 C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도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당연히 C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을 직급별 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C등급 인원은 발생하지 않음

액'의 172.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로 정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실제 C등급을 받는 인원 없이 사실상 S등급, A등급, B등급의 3개 등급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과 달리 최상위 등급인 S등급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의 지급률 차이가 2.03배에 지나지 않는 등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표 2] 4급 이하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원)

등급종류 지급연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4년	35	166,502,380	83	286,819,910	48	112,665,000	0	0	166	565,987,290
2015년	42	197,877,780	104	358,505,860	58	136,310,190	0	0	204	692,693,83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하위 등급의 인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 간 지급률을 3배 이상으로 정하여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소 관 청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내 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8조와 「국가회계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향유케 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와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2개)-성과목표(3개)-관리과제(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 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42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별 성과지표 5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37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개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중 4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는 37개 중 35개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성과계획 분야: 성과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미흡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3년 4월 기획재정부)의 II-2-(2)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에 따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등 과거 추세치를 감안하여 적극적 업무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수정지침」의 II-2-[6] ‘2013년 실적치 확정 변경 및 목표치 수정 가능’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2013년도 실적치를 잠정치로 작성한 경우 확정 실적치와 과거 실적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등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관리과제 ‘방송인프라 지원(II-1-재정①)’의 성과지표 ‘제주 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2012년 실적과 2013년 실적이 각각 74%, 75.5%인데도 이러한 과거 실적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2014년 목표치를 73%로 전년도와 같게 유지하여 실적을 102.2%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 성과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미흡 현황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목표치	실적치	달성을 (%)	목표치	실적치	달성을 (%)	목표치	실적치	달성을 (%)
관리과제 II-1-재정① 방송 인프라 지원	⑤ 제주 영어FM 방송 청취자 만족도(%)	72	74	102.8	73	75.5	103.4	73	74.6	102.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최근 3년간 성과지표의 달성을 100%를 상회하였는데도 기존 실적치보다 낮게 목표치가 설정되어 사업방식 개선 모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성과보고 분야

가. 성과계획서의 조사대상과 상이하게 실적 측정·보고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 및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2015년 1월 기획재정부) II-1. ‘작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등 주요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 ‘방송인프라 지원(II-1-재정 ①)’의 성과지표 ‘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의 측정방법(조사대상)을 성과계획서에는 ‘라디오 청취자 600명(1회) 및 영상콘텐츠 등 인터넷방송 이용자 1,000명(2회×500명)’으로 설정하고도 실제 조사(성과보고서)는 ‘국악방송 청취경험자 600명과 국악방송 홈페이지 이용자 총 433명(1차 269명, 2차 164명)’만으로 표본을 과소 측정·보고하였다.

[표 2] 성과계획서의 조사대상과 상이한 실적 측정 현황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계획서상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보고서상 자료수집 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을 (%)
관리과제 II-1-재정① 방송인프라 지원	⑥ 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	라디오 청취자 600명(1회) 및 영상콘텐츠 등 인터넷 방송 이용자 1,000명(2회×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각 만족도를 산술평균	방송지역 조사는 라디오 청취 패널(5,581명) 중 국 악방송 청취경험자 600명, 홈페이지 조사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이용자 총 433명(1차 269명, 2차 164명)	85	83.5	98.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나. 부적절한 실적 산정 기간 적용

(관리과제) II-1-재정③ 시청자 권익증진

(성과지표) ⑥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 만족도(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조정신청인 만족도+상담이용자 만족도+교육수강자 만족도)/3(%)

(목표치 및 실적치) 89/89.2(달성을: 100.2%)

「국가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성과보고서 포함)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에 시작하여 12. 31.에 종료하므로,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보고대상 산정 기간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시청자 권리증진(II-1-재정③)’의 성과지표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 만족도(점)’의 성과를 측정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측정대상기간을 2013년 8월에서 2014년 7월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언론조정중재제도의 2013년도 이용자가 조사대상에 포함¹⁾되었고 2014년 8월 이후 이용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2014회계연도 기준 성과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위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① 성과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등 과거 추세치를 감안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1) 총 조사대상자 2,206명(조정신청인: 527명, 상담이용자: 1,151명, 교육수강자: 528명) 중 2013년도 이용자 비중은 조정신청인 47.4%(250명), 상담이용자 46.0%(529명)임. 단, 교육수강자는 매 교육 시 설문지를 배포·수거한 후 만족도 조사기관에 일괄 제출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되지 않음

② 성과보고를 하면서 성과계획서상의 조사대상보다 적은 표본을 수집하여 성과를 측정하지 않도록 하며, 보고대상 산정 기간을 당해 회계연도로 설정하여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는 등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